

파.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100	200	300
하.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 제13호	100	150	200

◇개정이유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양환경평가의 실시방법(안 제5조의2)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단계에 따라 토양오염의 개연성, 토양오염 여부, 토양오염의 범위를 조사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조사 대상 부지의 오염 여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양관리단지의 조성계획(안 제11조의4 신설)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정하는 토양관리단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성목적, 대상 부지의 현황과 확보방안, 사업비 조달 방법, 주요 기반시설 설치·운영 계획, 환경보전계획,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17조의4제4항 신설)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기준 정립을 위하여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검입의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3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바목 단서 중 “조사분석업무 및”을 “조사분석업무,”로, “단순매매주문업무”를 “단순매매주문업무 및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제50조, 제69조, 제85조, 제268조 및 제271조의2에서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로 제공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3항에서 같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

나.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와 집합투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간의 경우

제5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투자업자(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가.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나. 금전의 용자

다.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라. 그 밖에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의 경우

제6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용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용자하는 방법

제80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400으로 한다.

제8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제26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제2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 6.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

제271조의2제2항 중 “300”을 “4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탁업자 및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 6. 주된 투자운용전략이 변경된 경우

제271조의2제5항제1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2제7항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 3.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 4.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3-13-2란 다음에 3-1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4-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	-------	-----------------------	---------------	----

별표 1의 비고란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3-14-1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3-1-2, 3-11-1, 3-11-2, 3-12-1, 3-12-2, 3-13-1, 3-13-2는 같은 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 11. 3-14-1의 투자자 유형은 제271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만 해당한다.

별표 20에 제7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법 제249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의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 등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거래한도의 확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안 제50조제1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증권대여, 금전대출, 재산의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른 금융투자업간의 정보교류를 금지하도록 함.

나.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안 제69조제2항 신설)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증권 매수대금의 용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신용공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다.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안 제80조제6항 단서 신설 및 안 제271조의2제1항·제2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각각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100분의 300 및 100분의 100에서 모두 100분의 400으로 확대하고,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투자비율을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함.

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 범위 확대(안 제271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신설)

- 1)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가 금융회사, 기금 등 일부로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투자자로 확대함.

마.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의 보고의무 강화 (안 제27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 1) 최근 선진 20개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국제적 금융위기 방지 등을 위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반영하고,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